

産資部 包裝技術事業公告따라 KPD 支援 施行 體制 完備

輸出增大 包裝技術 診斷·開發·展示支援에 力點

IMF 克服·經濟回生은 包裝競爭에서 이겨야

산업자원부는 1998.5.9일부 공고 제98-36호로 포장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『1998년도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』을 공고하였다.

동 시행 계획에 의하면,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을 사업시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, 지원내용은 포장 기술진단, 포장 기술개발 및 포장전시지원으로서 동 포장개발연구원내에 구성되고 있는 포장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위

촉하는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300여개 포장4측기업(포장재업, 포장소재업 포장기계업, 포장사용업체)에 대하여 포장기술 진단을 한 후, 이 가운데서 주로 수출증대 포장기술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 100여개를 선정, 기술개발을 실시하여 수출증대 포장을 공급케함으로서 IMF 극복과 경제회생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 동 산업자원부의 1998년도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.

1998년도 포장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〈산업자원부 공고 제98-36호 (98.5.9)〉

1. 사업목적

-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포장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
- 포장기술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포장기술개발 능력을 진단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 포장기술개발을 지원
- 진단 및 포장기술 개발결과 실용화가 가능한 포장제품에 대하여 산업기반기금(포장분야)과 연계·추진

2.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

가. 지원분야

- 포장재 및 포장기계 생산, 사용업체를 상호연계한 국내 및 수출포장의 신기술개발, 물류합리화 및 라인자동화, 상품의 원가절감으로 수출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이 가능한 공산품, 농축수산물 전통식품 등의 포장개발분야로서
- 포장재료·치수·강도·기법의 표준화
- 포장공정의 자동화, 창고시스템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
- 포장재 재활용 포장폐기물 최소화를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화
- 포장재 및 포장기계 개발

나. 지원대상

구 분	지 원 대 상
포장기술진단	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농어업 단체
포장기술개발	지도위원에 의해 진단을 받은 업체로 포장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큰 업체

□ 우선지원대상

- 수출유망품목중 포장개선을 통해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가 큰 상품의 제조기업
-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(중소기업청, KOTRA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)이 추천한 유망 중소기업
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

□ 포장기술 지도위원(포장기술 전문가)의 자격요건
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포장관련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포장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포장관련 분야에 3년 (기사 2급은 5년, 기능사는 7년)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
- 전문대학이상의 포장기술 및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
- 포장기술 및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받은자
- 4년제 대학에서 포장기술 및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포장기술개발 분야에서 5년 (전문대학 졸업자는 7년, 고등학교 졸업자는 9년)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

〈참고〉 지도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포장기술지도 위원 명단은 URL (<http://www.kqri.re.kr>)에 등록

3. 지원 규모

구분	내용	지원내역	지원비율(%)
진단	포장기술지도위원이 진단신청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포장기술개발 능력평가 개선방향제시	한개업체당 최대 3일간의 진단수당 지원 (1일 12만원)	10
포장기술개발	포장기술 지도위원에 의해 포장기술개발 지원	1개업체당 총 포장기술 개발비용의 80%이내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	85
전시	포장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판촉 및 홍보 촉진	포장(기자재)상품전시회 참가비용의 일부 지원	5

※ 진단, 포장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은 총 지원규모내에서 '98년 11월말까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나 자금소진시 지원중단

※ 지원분야별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의 참여정도에 따라 조정가능

4. 지원방법 및 절차

가. 진단지원

- 진단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지원신청서를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제출
-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은 신청서 접수후 7일 이내에 해당분야의 지도위원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진단 신청 업체에 파견하여 진단 실시
 - 지도위원은 지도위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진단신청업체가 원하는 자를 우선 선정·파견하되, 원하는 지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신청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지도위원을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선정·파견
- 지도위원은 진단실시후 10일 이내에 진단결과 보고서를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제출
 - 진단에 소요된 비용(진단수당)은 진단결과 보고서 접수후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지도위원에게 지급

나. 포장기술개발 지원

- 진단완료 업체중 포장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장기술개발 지원신청서 (계획서포함)을 한국 포장개발연구원에 제출
- 포장기술개발 지원대상업체 선정과 지원규모 및 지도위원 연계는 매월 1회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
 -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 - 개발수행능력
 - 포장기술개발 예산편성의 합리성 및 자체개발자금 확보상태
 - 개발방법 및 기간의 적정성
 - 개발성공(실용화, 사업화)가능성
 -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
 - 지도위원 선정·연계 기준
 - 지원대상업체가 원하는 자로서 지도위원 자격을 갖춘 자
 - 지원대상업체를 진단한 지도위원
 - 포장기술개발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
- 포장기술개발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15일 이내에 한국포장개발연구원, 지원대상업체, 지도위원간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기술개발 지원
- 지도위원은 포장기술개발 완료후 30일 이내에 개발결과보고서 및 시제품(결과물이 가능한 경우에는 결과물 포함)을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제출
- 포장기술개발 비용중 정부지원금은 개발결과보고서 제출후 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지도위원에게 지급
 - * 정부예산 사정으로 20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음
 - *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업체의 포장기술개발 분담금이 지도위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

다. 전시지원

- 포장기술개발을 완료한 업체의 포장(기자재)상품의 경우,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전시회의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
 - 전시회 개최장소, 일정, 지원내역 등 세부사항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서 개별통보

5. 제재조치 및 접수(문의)처

가. 제재조치

- 지원대상업체 또는 지도위원이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활용하거나,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신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나. 접수(문의)처

- 한국포장개발연구원 포장개발연구부
 -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3 미주빌딩 7F (우 150-010)
 - 전화 : (02) 3775-0567, (02) 761-3770
 - FAX : (02) 761-3771
 - 인터넷 : <http://www.kpri.re.kr>

※ 접수는 직접 방문제출, 우편, FAX도 가능

〈별지 2-1호 서식〉

포장기술개발계획서 (개발개요)	
개발과제명	
개발목적	
개발범위	
개발필요성	
추진방향	
기대효과	
향후 활용방향	

〈별지 2-2호 서식〉

포장기술개발계획서 (개발일정표)		
순서	세부추진내용	일정

작성요령

* 기초조사부터 개발종료까지를 DIAGRAM식으로 자세히 기술

〈별지 2-3호 서식〉

포장기술개발 참여연구원								
직 위	소 속	성 명	전공 및 학위 (최종)				참여율 (%)	해당분야 경력
			학 교	졸업년도 (학위취득년도)	전 공	학 위		

〈단위 : 천원 / 월〉

구 분	책임급	선임급	원 급	사실기능직
대 학	부교수 이상	전임강사 이상	박사과정 재학생 이상	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듯이 필요한 연구요원
국공립연구기관	4급이상 직원	5급이상 직원	9급이상 직원	기능직
산업기술연구 조합 민간생산기술 연구소, 기업	· 대학이상의 과정(포장관련학과) 이수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·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·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·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	· 대학이상의 과정(포장관련학과) 이수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·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·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·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	· 대학이상의 과정(포장관련학과) 이수자 ·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	· 책임급, 선임급, 원급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
인건비	3,800	2,800	2,000	1,600

※ 국내여비 정액표

직 급	철도운임	현지교통비 (1인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책 임 급	1 등급	7,000	30,000	18,000
선 임 급	2 등급	7,000	25,000	16,000
원급이하	3 등급	7,000	20,000	14,000
1 등급, 2등급 -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 - 무궁화 보통실				

<별지 2-4호 서식>

포장기술 개발비 예산 내역서		
개발과제명 비목	예산(단위/천)	산 출 기 준
인건비 예) 직급계상기준 × 참여율 × 기간 = 30 = 인건비		
재료구입비		
연구용시작품 제작비		
연구기자재 임차료 및 시험수수료		
여 비		
자료조사및 시장조사비		
제집비		
합 계		